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374호 2013. 6. 5 (수요일)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088호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 개정규칙..... 2

회 람									
--------	--	--	--	--	--	--	--	--	--

하 동 군 공 보

(2) 제 374 호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6월 5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1088호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 개정규칙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이하 같음)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읍·면 보건지소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별도로 지정)”을 “(읍·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에 대하여는 제6호와 제7호에서 별도로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보건진료소

- 일상경비출납원 - 보건진료소장
- 수입금출납원 - 보건진료소장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4조제2항제3호 “과오납금의 반환”을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의 반환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1-1 호서식”)”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제50조제3항 중 “공무원여비,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을 “공무원여비,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4) 제 374 호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세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 ② 군금고 및 군금고지출대행점, 군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시스템 이용이 불가할 경우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주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주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 등 확인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 전화번호 등 입력

제54조제3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56조의 후단을 삭제한다

제59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1(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①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기관 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7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1호 서식에 따라 납부 할 수 있다.

제76조제3항 중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를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로 한다.

같은 조 제5항 중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를 “군수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로 한다.

제77조제2항 중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를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사업부서 담당주사의 협조를 거친 후”로 하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는 제50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이 경우에는 제50조의2에 따라 지급명령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를 “이 경우에는 제50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9조의 단서를 삭제한다.

하 동 군 공 보

(6) 제 374 호

제11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8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21조의1을 삭제한다.

제123조제2항 중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감리업무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검수를 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의 “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세 입 예 산 요 구 서(제9조 관련)

20 년도

실과소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요구액 ①	전 년 도 예 산 액 ②	비교 증감	사업 개요
장	관	항	목				

<개정 08:2:18>

<별지 제1-1호 서식>

세 출 예 산 요 구 서

20 년도

실과소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요구액 ①	전 년 도 예 산 액 ②	비교증감
정 책	단 위	회 계	세 부	편 성 목	통 계 목			

하 동 군 공 보

(8) 제 374 호

<별지 제63-1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제76조 관련)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xx-xxxxxxxx-xxxxxx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xxxxxx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xx-xxxxxxxx-xxxxxx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xxxxxx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xx-xxxxxxxx-xxxxxx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xxxxxx
납부자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